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1-8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 이유

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협의회체를 구성하여,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,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법질서 확립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함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협의회의 의장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청 등에 의해 소집하는 임시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마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
- 바.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확충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 : 관련 예산 편성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1. 10. 6. ~ 10. 26.)결과, 특이사항 없음.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11. 10.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·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,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범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
3.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지역 내 범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, 마포구의회 의장, 마포경찰서장,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, 마포 소방서장,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아동, 청소년, 여성분야 등 전문가
2.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
3. 행정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
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
2. 참여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
3.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
4. 회의록 작성 비치
5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

제8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

제9조(회의)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·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, 협의회에서 조정·협의를 한 사항을 추진한다.

제11조(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협의회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,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 등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제5조 제1항의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